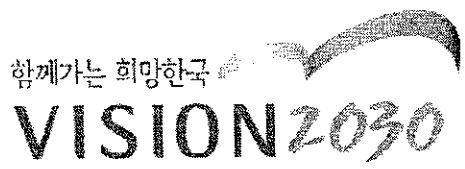



<<보도시 출처표기 바랍니다>>



 보건복지부 <small>MINISTRY OF HEALTH &amp; WELFARE</small>	보도자료	자료배포일	12월 4일	매 수	총 13매	
		보도일시	<b>12월 5일(화) 석간</b>			
	공공의료팀	과 장	김현준	전화	031)440-9132	
		사 무 관	김인기	전송	031)440-9134	

**「장애인 이용증진을 위한 지방의료원 시설·장비 보강사업」 시행**

- 지방의료원에 장애인치과센터 설치 및 장애인 전문 진료장비 확충사업 -

**<주요내용>**

-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전국 장애인에 대한 의료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질 높은 구강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치과 전문치료센터 설립 및 장애인 전문진료장비 확충사업을 지원키로 하였다.
- 동 사업은 기존의 34개 지방의료원 중 지역사회 진료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을 권역별로 1 ~ 2개소씩 최대 10개소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,
- '07년도에는 지방의료원의 시설·장비 국고지원금 약 178억원 중 2,766백만원(국고 1,383백만원)의 예산(국민건강진흥기금)이 지원될 예정이다.
- 지원내용
  - 장애인 치과센터 설치사업에는 개소당 총 400백만원(국비 200백만원)을 지원하고, 이 중 시설지원은 150백만원, 장비지원은 250백만원 범위에서 지원되며, 장비지원에는 장애인 전용 치과 진료 차량도 포함되어 있다.

<<보도시 출처표기 바랍니다>>

- 또한, 동 센터가 설치된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장애인 전문 진료 장비 확충을 위해 개소당 총 100백만원(국비 50백만원)이 지원되어, 외래 및 병동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진료를 원활하고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장비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.

○ 선정절차 등

-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상 지방의료원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·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.
- 보건복지부(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)에서는 제출된 신청자료에 대하여 10명 이내의 전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, 서면평가 및 구두발표, 현지조사, 종합평가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

○ 이러한 사업이 지역거점별로 완료되는 2008년부터는 전국 장애인(전체인구의 3.5%) 중 치과진료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환자 31만명(17%)에 대한 전문적인 치과진료의 수혜가 가능하게 되고,

- 또한,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 봤다.

○ 앞으로도,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체적 장애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이 지방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

※ 관련자료 : 2007년 장애인 이용증진을 위한 시설·장비 보강사업 계획

<<보도시 출처표기 바랍니다>>

**2007년**  
**장애인 이용증진을 위한**  
**시설·장비 보강사업 계획**

**2006. 11.**

**보 건 복 지 부**  
**(공 공 의 료 팀)**

## I. 사업 추진배경

- ◇ 전국 장애인 170만(전체인구의 3.5%)에 대한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으로 의료제공의 형평성 제고
- ◇ 특히, 치과진료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환자 31만명(17%)을 위한 치과 전문진료센터를 설립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질 높은 구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

- 장관주재 정책토론회('지역사회기반 공공보건의료확충 추진계획', '06.8.8)에서 장애인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제고 및 이용증진을 위한 시설·장비 확충 검토·추진
- "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"(05.12월) '구강보건체계 확충-구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확대' 계획 수립
- 단계적으로 국·공립 의료기관 및 치과대학병원 치과 진료실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실을 설치하도록 시설·장비비용 지원 추진("장애인 치과진료 종합대책 관련 장애인 치과진료 네트워크 활용방안" 수립, '06.10.10)
- '07년 지방의료원 국고지원사업 예산 중 일부를 지방의료원내 장애인 치과센터 설립 및 장애인 전문 진료장비 확충을 위한 비용으로 우선확보(1,383백만원)

<<보도시 출처표기 바랍니다>>

## II. '07년도 장애인 이용증진을 위한 시설·장비보강사업 계획(안)

### 1. 사업내용

- 지원대상기관 : 지방의료원
- 지원기관수 : 권역별로 1~2개소씩 최대 10개소 설립
  - ※ 6개 권역구분 : 수도권(서울,인천,경기), 강원권(강원), 충청권(충북,충남), 영남권(부산,대구,경북,경남), 호남권(전북,전남), 제주권(제주)
- 지원예산액 : 총 2,766백만원(국비 1,383백만원, 지방비 1,383백만원)
  - 기관당 최대 총 500백만원(국비 250백만원, 지방비 250백만원) 범위 내에서 시설 및 장비보강 지원
  - ※ 재원분담 비율 : 국비 50%, 지방비 50%
  - ※ 지자체 및 사업대상자가 사업비를 추가확보할 경우, 선정 평가시 가점 부여
- 지원분야
  - 장애인 치과센터 설치사업(시설·장비)
  - 장애인 전문 진료장비 확충사업(장비)

### 2. 지원기준

- 공통기준
  - 장애인 치과센터 설치사업 신청기관에 한하여 장애인 전문 진료 장비 확충사업 추가로 신청가능(장애인 전문 진료장비 확충사업만 단독으로 신청불가)

<<보도시 출처표기 바랍니다>>

## □ 장애인 치과센터 설치사업

### ○ 지원내용

- 장애인 치과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·장비비 지원

### ○ 지원한도액 : 개소당 400백만원(국비 200백만원)

- 시설지원한도액 : 150백만원 (국비 75백만원)
- 장비지원한도액 : 250백만원 (국비 125백만원)

### ○ 시설지원범위

- 치과진료실 확장 및 실구획, 기계·전기설비 확충, 출입문 교체, 수납 등을 위한 불박이장·싱크대, 인테리어 개보수 비용 등 장애인 접근을 안전·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반 시설 확충 비용
- 장애인 치과센터에 필요한 집기 및 비품 허용(10백만원 한도)

### ○ 장비지원범위

- 장애인 치과진료 차량은 150백만원 한도
- 장애인 치과 진료 및 지원을 위한 의료장비는 100백만원 한도
- 지원 기준장비목록 참조
- 지원 기준장비목록외 장비를 신청한 경우 타당성 등을 심의·검토 후 지원 결정

<<보도시 출처표기 바랍니다>>

## □ 장애인 전문 진료장비 확충사업

### ○ 지원내용

- 외래 및 병동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진료를 원활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료장비 지원

### ○ 지원한도액 : 개소당 100백만원(국비 50백만원)

### ○ 지원범위

- 의료장비에 한함
- 지원 기준장비목록 참조
- 지원 기준장비목록외 장비를 신청한 경우 타당성 등을 심의·검토 후 지원 결정

## 3. 추진일정

- 「장애인 이용증진을 위한 시설·장비보강 사업지침」 배부 : '06.11월 중
- 사업계획서 접수 : '06.12월 중
- 사업계획서 평가 : '07.1월 중
  - 서면평가(1차), 현지평가(2차)
- 지원대상 선정·통보 : '07.2월 중
- 예산교부 신청(세부사업계획서 포함) 및 예산 교부 : '07.2월 이후

<<보도시 출처표기 바랍니다>>

### Ⅲ. '07년도 장애인 이용증진을 위한 시설·장비보강사업 대상기관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

#### 1. 사업대상

- 지방의료원으로서 지역사회 장애인 진료실적 및 연계가 우수하고, 실효성 있는 인력·시설·장비 계획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갖춘 기관

#### 2. 선정절차

##### 가. 사업계획서 제출

-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·도를 경유, 보건복지부에 제출

##### 나. 사업계획서 평가

-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이용증진을 위한 시설·장비 보강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를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(이하 '지원단'이라 한다)에 의뢰
- 지원단은 전문분야를 감안하여 관계 공무원, 외부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

<<보도시 출처표기 바랍니다>>

### ① 서면평가 및 구두발표 평가

- 평가위원회는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해 선정기준의 각 요소별로 서면평가 실시
- 평가위원회는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신청사업 세부내용에 대한 구두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

### ② 현지평가

- 평가위원회 및 지원단은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서와 일치 여부 확인, 운영의지, 인력수급 및 지속적인 운영가능성 등을 평가
- 단, 서류평가 및 구두발표 평가만으로 대상기관 선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현지평가 생략 가능

### ③ 계수조정 및 종합평가

-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분야별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및 종합평가 실시

### 다.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

- 지원단은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, 보건복지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치과센터 설치 지원대상을 선정, 이를 시·도에 통보

<<보도시 출처표기 바랍니다>>

라. 사업관리

- 선정이후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반 사업관리 절차(심의 포함)는 『2007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국고지원사업지침』을 준용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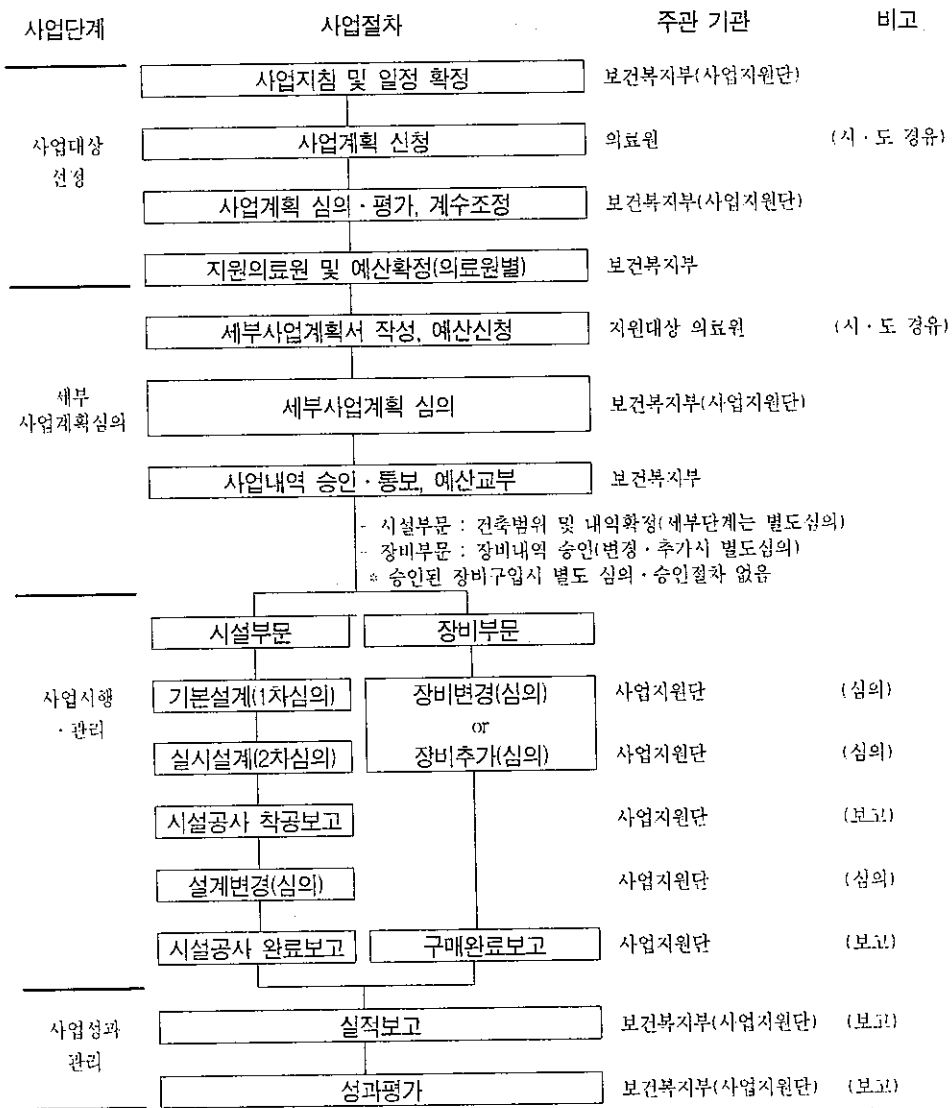


그림 1 사업절차도

<<보도시 출처표기 바랍니다>>

### 3. 선정기준

- 『장애인 치과센터 설치사업』 만을 평가·선정
- 동 사업 지원 선정기관에 한해 『장애인 전문 진료장비 확충사업』 예산을 배분하되, 장비 세부심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지원금액 확정

#### □ 평가항목 및 주요 평가 내역

구분	평가항목	배점
공통 분야 (50)	-지역거점가능성	15
	-설치의 필요성	10
	-지속적인 운영의지	10
	-정부정책 준수	10
	-계획서 충실도	5
시설 (15)	-시설 확충 가능성	10
	-시설비 추계 적정성	5
장비 (25)	-의료장비 교체 또는 신규구매의 시급성	10
	-의료장비 활용의 적절성	5
	-장비운영계획	5
	-장비의 사양 및 가격의 적절성	5
지자체(10)	-재정자립도	5
	-지자체 지원계획	5
계		100

※ 제시한 평가기준 및 배점은 예시이며 평가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

<<보도시 출처표기 바랍니다>>

## <별첨> 지원 기준장비 목록

### ■ 장애인 치과센터 설치사업 기준장비

용도	장 비 명	단위	규격 및 사양
기본 진료장비 및 장애인 진료장비	장애인용 치과유닛 및 의자 (dental unit & chair)	세트	고속/저속 엔진, 흡입기, 초음파 치석제거기 scaler) 부착
	에어 콤푸레서 (air compressor)	대	1/2 또는 3/4 마력(치과용)
	Vacuum suction	대	
	포터블 석션기	대	
	이동식 라이트	대	
방사선 장비	치과방사선촬영기(X-ray apparatus)	대	치과용
	Panorama x-ray	대	-
	이동식 치과방사선 촬영기	대	
전신마취 및 심폐소생 장비	전신 마취기	대	
	환자 감시장치	대	
	제세동기(Defibrillator)	대	
	N2O 마취기	대	
소독 및 멸균 장비	심전도기	대	
	Autoclave	대	
	EO gas sterilizer	대	
	초음파 세척기	대	
	자외선 소독기	대	
치과 치료기구	정수기	대	
	Alginate mixer	대	
	Pulp vitality tester	대	
	전동 근관치료 장비	세트	전동화일모터, 근관장 측정기 등
	아말감 혼합기	대	
	치과용 광중합기	대	
	전기수술기	대	
	Laser 수술기	대	
	방사선 판독기	대	
전기치수검사기	대		
차량	장애인 치과치료차량	대	
기타	기타 소기구		보존, 치주, 보철 등 제반 소기구 세트

주1) 장애인 치과전문치료를 위해 기준장비목록외 장비를 신청할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할 것

주2) 기타 소기구는 별도로 세부내역을 작성할 것

<<보도시 출처표기 바랍니다>>

■ 장애인 전문 진료장비 확충사업 기준장비

장 비 명	단위	지원기준
전동식 진료대	대	주요 진료과 우선 (최대 10대)
전동 휠체어	대	외래3, 입원2 최대 5대
전동 분만대	대	1대(연간 분만실적 제출)
전동식 환자침대	대	최대 20대
이동식 샤워트롤리	대	외래1, 입원1
이동식 침상 저울	대	외래1, 입원1

주)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기준장비목록외 장비를 신청할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할 것